

## 관 변 경 (案)

현 행	변 경 (안)	비 고
<p>제2조(목적)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~ 29. (생략)</p> <p>30. 위 각항의 부대사업 및 국내외 투자</p>	<p>제2조(목적)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~ 29. (좌동)</p> <p>30.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</p> <p>31.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</p> <p>32.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</p> <p>33.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</p> <p>34. 위 각항의 부대사업 및 국내외 투자</p>	사업목적 추가
<p>제7조의2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</p> <p>① ~ ⑧ (생략)</p> <p>⑨<u>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7조의2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</p> <p>① ~ ⑧ (좌동)</p> <p>⑨ (삭제)</p>	상법 개정으로 인한 삭제
<p>제9조의2(주식매수선택권)</p> <p>① ~ ⑦ (생략)</p> <p>⑧<u>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⑨ (생략)</p>	<p>제9조의2(주식매수선택권)</p> <p>① ~ ⑦ (좌동)</p> <p>⑧ (삭제)</p> <p>⑨ (좌동)</p>	상법 개정으로 인한 삭제
<p>제9조의3(신주의 배당기산일)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9조의3(동등배당)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)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	배당기산일에 관한 상법 규정 삭제
<p>제10조(명의개서대리인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<u>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</u></p>	<p>제10조(명의개서대리인)</p> <p>① ~ ③ (좌동)</p> <p>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<u>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.</u></p>	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업무 폐지

현행	변경(안)	비고
<p><b>제11조 (삭제)</b></p>	<p><b>제11조(주주명부 작성·비치)</b> ①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이 회사는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 내용 반영</p>
<p><b>제12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</b>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</p> <p>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/p> <p>③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12조(기준일) (삭제)</b></p> <p>①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/p> <p>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상법 개정내용 반영</p>
<p><b>제13조의2(전환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~ ⑤ (생략)</p> <p>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<b>제13조의2(전환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</p>	<p>상법 개정내용 반영</p>
<p><b>제14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~ ⑤ (생략)</p> <p>⑥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<b>제14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(삭제)</p>	<p>상법 개정으로 인한 삭제</p>

현 행	변 경 (안)	비 고
<p>제14조의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(단서 신설)</p>	<p>제14조의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다만,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</p>	<p>전자등록이 의무화 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제외 근거 신설</p>
<p>제29조(이사 및 감사의 선임)            ① (생략)            ②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            ③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.</p>	<p>제29조(이사 및 감사의 선임)            ① (좌동)            ②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의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            ③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           ④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.</p>	<p>개정 상법 제409조 반영</p>
	<p>부 칙 (2021. 3. 25)            이 정관은 제5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</p>	